

서부간선지하도로 정기, 정밀안전점검 용역 변경계약서

계약자	발 주 자	서서울도시고속도로(주)
	계 약 상 대 자	• 상 호 : (주)명성엔지니어링 • 법인등록번호 : 131211-0040887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69번길 18, 301호 • 대표자 : 김 선 무 • 전 화 번 호 : 031) 886-7422
계약내용	계 약 건 명	서부간선지하도로 정기, 정밀안전점검 용역
	계 약 금 액 (V A T 포 함)	당 초 : 일금 이억일천삼백팔십사만 원정(₩ 213,840,000) 변 경 : 일금 이억사백일십팔만이천 원정(₩ 204,182,000) 감 : 일금 구백육십오만팔천 원정(₩ 9,658,000)
	계 약 기 간	2022년 03 월 01일 ~ 2024년 12월 31일 (변경없음)
	과 업 내 용	정기점검 5회, 정밀안전점검 1회
	지 체 상 금 율	1000분의 1

- 본 변경계약서에서 변경 약정하지 아니한 원계약서의 각 조항은 계속하여 효력을 가진다.
-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불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23 년 10 월 30 일

- 불임서류 : 1. 정기, 정밀안전점검 일반계약조건 1부,
 2. 정기, 정밀안전점검 과업지시서 1부, 끝.

(발 주 자)

명 칭 : 서서울도시고속도로(주)

대표자 : 대표이사 이 의 도 (인)

(계약상대자)

명 칭 : (주)명성엔지니어링

대표자 : 대표이사 김 선 무 (인)

정기, 정밀안전점검 일반계약조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서울도시고속도로 주식회사 (이하 “발주자”라 한다)와 정기, 정밀안전점검(이하 “안전점검”이라 한다)의 실시자인 (주)명성엔지니어링 (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발주자”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구조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고 필요시 보수·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재해 및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증진과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과업 내용 및 범위)

본 계약의 과업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과업내용 : 서부간선지하도로 시설물 정기점검(5회) 및 정밀점검(1회)
2. 과업범위 : 서부간선지하도로내 1, 2종 시설물 및 부대시설(수직구, 건축물 등)

제3조(계약기간)

- ① 본 계약의 기간은 2022년 3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②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의 시행시기는 “첨부1 안전점검 수행시기 및 용역금액”에 따른다.
- ③ 단, 천재지변 및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협의하여 그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4조(계약금액의 산정 및 변경)

- ① 계약금액의 산정은 계약상대자의 견적서에 의한다.
- ② 계약기간 중 안전점검의 항목 및 수량의 증·감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 ③ 제3조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5조(기술용역의 착수 및 보고)

-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당사에 제

출하여야 한다.

1. 기술용역공정예정표
2.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3.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발주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대가의 지급 등)

- ① 본 용역의 대가 지급은 안전점검을 완료후 “계약상대자”가 그 성과품을 제출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 세금계산서 발행 후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 ② 용역 대가의 청구는 “첨부1 안전점검 수행시기 및 용역금액”에 따른다.

제7조(계약상대자의 의무)

-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한다.
- ② “계약상대자”는 “특별법” 및 한국시설안전공단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에 의거 성실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 ③ “계약상대자”는 안전점검을 실시함에 있어 “발주자”가 “특별법”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를 기초로 수행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주요결함사항 및 보수·보강 내용 등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 ④ “계약상대자”는 안전점검 수행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며,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실시결과의 통보)

- ① “계약상대자”는 각 안전점검이 종료한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안전점검의 실시결과를 통보하고,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중대한 결함이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하도급 금지)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와 계약한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0조(설계도서 등의 열람교부 등)

- ① “계약상대자”는 안전점검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해당 시설물의 설계·시공 및 감리와 관련된 서류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② 다만, 국방 기타 보안상의 기밀을 요하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발주자” 또는 관련기관의 동의를 얻어 이를 열람할 수 있다.

제11조(발주자의 의무)

- ①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안전점검을 공정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제반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 ② “발주자”는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함에 있어서 시설물의 근접조사 및 상세조사가 가능하도록 “계약상대자”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인·허가 사항 등)

“계약상대자”가 안전점검 업무와 관련하여 인·허가 등의 사항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안전점검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하자보증)

계약상대자는 하자기간 중 발생하는 본 계약상의 모든 하자에 대하여 보수 및 재시공의 책임을 지고 이를 보증하기 위하여 “발주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현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단, 유가증권, 하자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4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본 계약은 다음의 경우에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전쟁,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안전점검 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한 때
2. “발주자” “계약상대자”의 안전점검 업무가 필요치 않다고 협의되었을 때
3. “발주자”가 제11조의 의무를 기피하여 “계약상대자”의 정상적인 진단이 곤란할 때
4.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3조에 정한 기간 내에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

제15조(손해배상)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주자”에게 손해가 발생되면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16조(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 ①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에 종사하는 “계약당사자”의 고용인에 대한 안전사고와 재해예방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필요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고의, 과실 또는 부주위로 인해 “발주자” 또는 제3자에게 인명, 재산 등의 피해가 발생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이에 대한 일체의 민형사상의 보상 책임을 진다.

제17조(보안사항)

“계약상대자”는 안전점검 수행 시 얻은 정보 또는 성과품 및 자료를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발주자”의 사전승인 없이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제18조(기타사항)

“계약상대자”는 “특별법” 제26조에 의거 정밀안전점검을 국토안전관리원이 대행하여야 할 경우 본 계약의 과업범위 및 내역서에서 삭제할 수 있음을 동의한다.

제19조(관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발주자”의 소재지에 위치한 관할법원이 재판관할을 갖는다.



< 첨부1 > 안전점검 수행시기 및 용역금액

(단위 : 원, Vat별도)

수행시기	안전점검 내용	용역금액			비고
		당 초	변 경	증 감	
2022년 상반기	정기안전점검	20,000,000	20,000,000	-	
2022년 하반기	정기안전점검	20,000,000	20,000,000	-	
2023년 상반기	정기안전점검	20,000,000	20,000,000	-	
2023년 하반기	정밀안전점검	94,400,000	89,180,000	-5,220,000	
2024년 상반기	정기안전점검	20,000,000	18,220,000	-1,780,000	
2024년 하반기	정기안전점검	20,000,000	18,220,000	-1,780,000	
계		194,400,000	185,620,000	-8,780,000	

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에 의거 정밀안전점검은 국토안전관리원만이 대행하여야 할 경우 본 계약(내역서)에서 삭제할 수 있다



정 기 , 정 밀 안 전 점 검 용 역
과 업 지 시 서

2023. 10.



서서울도시고속도로 주식회사

1. 과업명

『 서부간선지하도로 정기, 정밀안전점검 용역 』

2. 과업의 목적

본 용역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제9조에 의거 실시하는 안전점검 용역으로 대상시설물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정밀한 외관조사를 통해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하여 향후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정기·정밀 점검 등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과업의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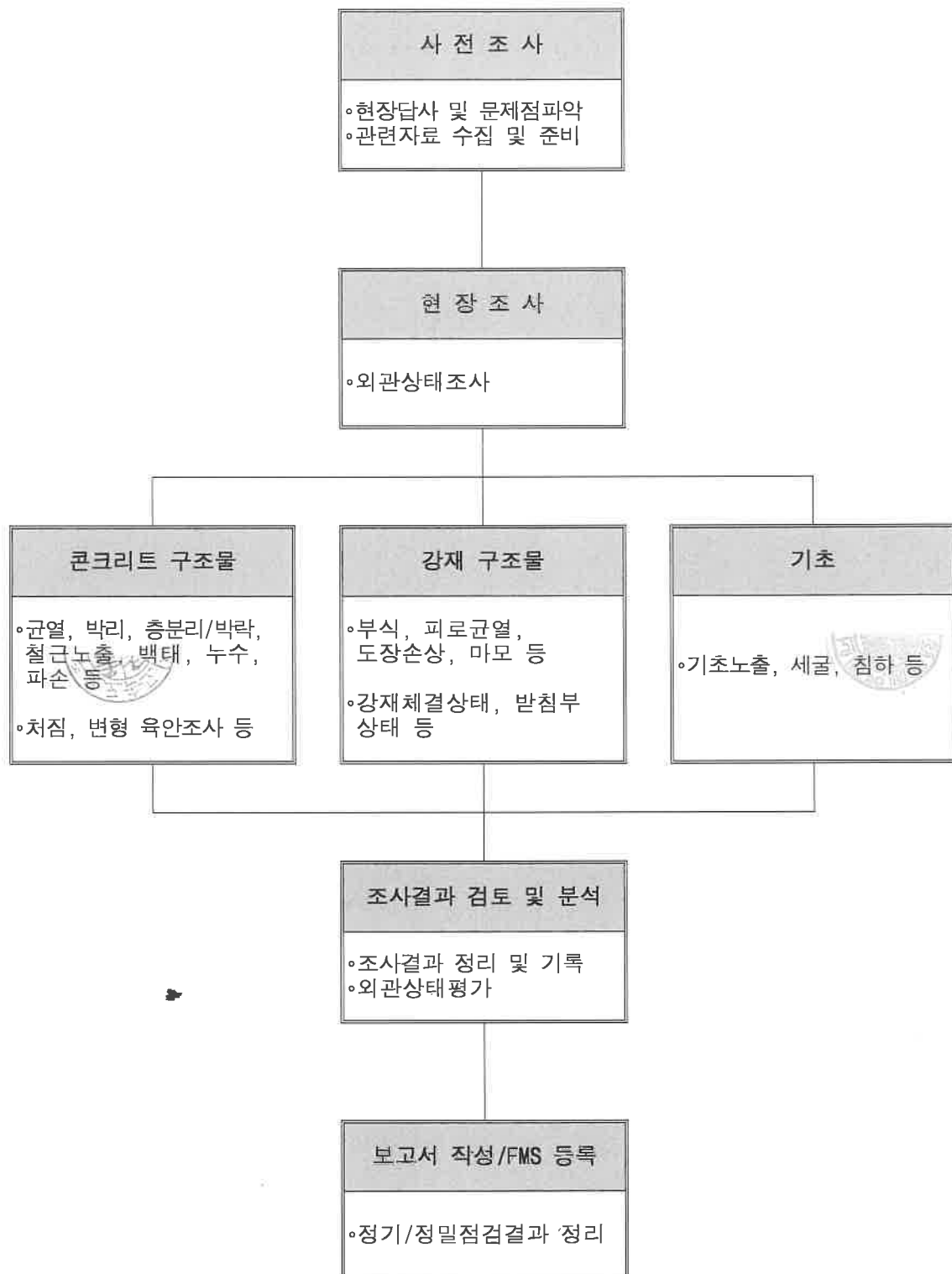
3.1 과업의 범위

- 1) 현장답사 및 관련자료 수집·검토
- 2) 정기점검 및 정밀점검
- 3) 조사결과 검토 및 분석
- 4) 유지관리방안 제시
- 5) 보고서 작성
- 6)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 입력

3.2 대상시설물 현황

- 1) 터널 : 1식(도면 참조)
- 2) 지하차도 : 1식(도면 참조)

3.3 과업의 범위 및 시행 흐름도



(1) 과업내용

· 정기점검 5회, 정밀점검 1회 (2022년 상반기~2024년 하반기)

(관련지침 :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국토교통부)

“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안전점검등의 대행)에 의거 정밀점검(1회)은 국토안전관리원만이 대행하여야 할 경우 당 과업(내역서)에서 삭제할 수 있다.”

가. 정기점검

- 시설물의 안전성 확인을 위한 세심한 육안관찰
- 시설물의 기능적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현재의 사용요건을 계속 만족시키는지 여부

나. 정밀점검

1) 자료수집 및 분석

- 준공도면, 구조계산서, 특별시방서, 수리·수문계산서
- 시공·보수·보강도면, 제작 및 작업도면
- 시설물관리대장
- 보수·보강이력

2) 현장조사 및 시험

- 기본시설물 또는 주요부재의 외관조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 간단한 현장 재료시험 등
- 필요시 안전성평가 등에 필요한 조사·시험

3) 상태평가

- 외관조사 결과 분석
- 현장 재료시험 결과 분석
- 대상 시설물(부재)에 대한 상태평가
-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에 대한 책임기술자의 소견 (안전등급 지정)
- 필요한 부위의 구조·지반·수리·수문 해석 등 안전성평가

4) 보수·보강 방법

- 필요시 보수·보강 방법 제시

(2) 점검결과 작성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과 실무요령에 의거 작성
- 보고서는 시설물 관리주체의 유기관리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업내용을 중심으로 작성·제출한다.

<정기/정밀안전점검 보고서 목차>

1. 서 두 :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정기점검의 개략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 제출문(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장)
- 참여기술자 명단
- 시설물의 위치도
- 시설물 전경사진
- 정밀점검 실시결과 요약문
- 보고서 목차

2. 정기/정밀안전점검의 개요 : 정기점검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정기점검 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 점검의 목적
-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 점검의 범위 및 과업내용
- 사용장비 및 기기
- 점검 수행일정

3. 시설물의 외관상태 결과 :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시설물의 외관상태 결과 작성한다.

- 주요부재별 외관조사 결과분석
- 주요한 결함의 발생원인 분석

4. 종합결론 및 건의

- 정기/정밀안전점검 결과의 종합결론
-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 기타 필요한 사항

(3) 점검결과 입력

- “한국시설안전공단 FMS 시스템” 점검결과 입력

4.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 (2) 기본계획을 포함한 주요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 (3) 기타 발주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5.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1) 계약상대자가 과업 착수 시 제출할 착수신고서와 착수신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서류의 내용과 서식은 다음과 같다.

- ① 착수신고서
- ② 사업수행계획서
- ③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 ④ 세부공정계획서
- ⑤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
- ⑥ 사업수행 조직표
- ⑦ 안전관리계획서

(2) 계약상대자는 당해 시설물의 설계도서 등 유지관리자료와 과업지시서 등이 법령 및 지침, 세부지침 등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용역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리주체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그 방침을 받아 용역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용역업무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별도로 기간을 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3) 설계도서 등의 사전검토를 거쳐 관리주체의 방침을 받은 결과를 반영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용역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 서류 1부를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6.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7. 안전관리

7.1 일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사람은 안전은 물론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진단측정 장비 및 기기 등을 안전하게 운용하고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7.2.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종사자의 안전

- (1)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사람은 안전모, 작업복, 작업화와 필요한 경우 청각, 시각 및 안면보호장비 등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장구를 항상 착용하여야 하며 진단측정장비 및 기기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하여야 한다.
- (2)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유해물질, 가스 및 산소결핍 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한다.

7.3. 공공의 안전

공공의 안전측면에서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기간동안 교통 통제와 작업 공간 확보를 위하여 적절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8. 용어의 해석

과업지시서상 외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9. 점검계획

점검계획은 현장에서의 예비조사 후에 수립하며 조사항목은 아래와 같다.

- (1) 현장여건 및 문제점
- (2) 시설관리자 및 주민의견 청취
- (3) 제반시설 관련자료

이때 도면 및 자료를 개략 검토한 후에 조사를 수행함으로써 구조물의 형상이나 세부사항들에 대한 예비검증이 되도록 한다.

10. 점검계획 수립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조사범위 및 항목결정
- (2) 기존 점검자료 검토
- (3) 분야별 소요인원 및 구성
- (4) 점검기간 및 계획된 작업시간 예측
- (5) 현장여건 및 문제점
- (6) 점검 장비 선정
- (7) 점검종사자 안전

◦ 점검업무 및 접근방법과 관련하여 점검자는 안전사고 예방에 유의한다.

- (8) 기타 점검자와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11. 성과품 납품목록

- (1) 정기/정밀점검 보고서 : 각5부
- (2) USB보고서 : 5Set

